

지표로 보는 이슈

제98호 | 2017년 10월 11일 발행처 |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| 이내영 www.nars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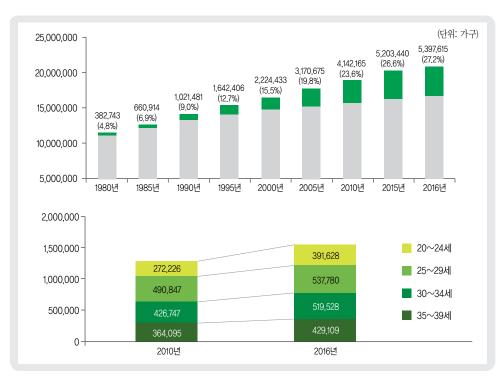
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

-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, 1인가구는 539.8만 가구이고, 청년층 1인가구는 187.8만 가구(전체 가구의 약9.5%)임
- 청년층 가구는 주로 40㎡ 이하의 단독·다세대주택에 거 주하고 있으며, 주택점유형태는 월세 62.9%, 전세 21.0% 로 임차가구 비중이 높음
- 특히, 청년층 가구 중 20~29세 청년의 65% 이상이 월 세에 거주하고 있고, 매달 20~40만 원의 임차료(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)를 지불하고 있음
- 청년층 1인가구에 대해 '부담가능하고, 적정한 주택 (affordable and decent housing)'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거복지의 확대 측면에서 정책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



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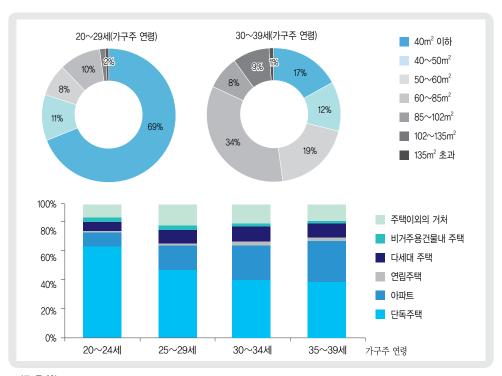
1인가구 추이



자료: 통계청

-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, 전체 1,983.8만 가구 중 1인가구는 539.8만 가구(약 27.2%)임
- 2010년부터 연령별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는데, 2016년 기준, 청년층(20세 이상 39세 이하) 1인가구는 187.8만 가구(전체 가구의 약 9.5%)임
 - 2010년과 2016년의 청년층 1인가구를 비교해볼 때, 20세 이상 24세 이하는 약 43.9%, 25 세 이상 29세 이하는 약 9.56%, 30세 이상 34세 이하는 약 21.7%,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약 17.9% 증가함

청년층 가구의 주택사용면적 및 거처 종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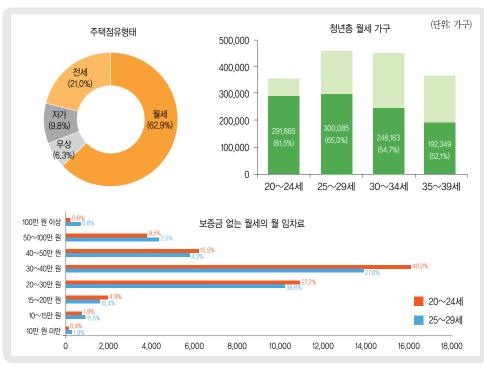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

- 청년층 가구는 주로 40㎡ 이하 단독·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
 - 특히, 20세 이상 29세 이하 가구주 중 약 69%가 40㎡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, 20대 가구주의 경우, 60% 이상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데, 이는 원룸 등 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임
 - 또한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도 10~15%를 차지함
 - * 인구주택총조사에서 '주택이외의 거처'는 주택의 요건(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,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, 독립된 출입구,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)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으로서, ① 오피스텔, ② 호텔,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, ③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, ④ 판잣집, 비닐하우스, ⑤ 기타(①~④ 이외의 거처로 업소의 잠만 자는 방, 건설 공사장의 임시막사 등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 등) 등임
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청년층 가구의 주택점유형태



주: 2015년 통계청이 실시한 표본조사(20%) 결과를 토대로 작성함

자료: 통계청

-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, 청년층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는 월세 62.9%, 전세 21.0%로 임차가구 비중이 약 84%임
 - 특히, 청년층 가구 중 20~29세 청년의 65%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, 매달 20~40만 원의 임차료(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)를 지불하고 있음



- 「주거기본법」제2조에서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·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 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
 - 그런데 20~30대 청년층의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 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,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주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
- 제20대 국회에는 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
 등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는 법률안이 2건 발의되어 있음
 - 「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2017년 8월 10일, 윤영일의원 대표발의)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 1인가구의 금융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임
 -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2017년 9월 4일, 김현아의원 대표발의)은 주거약자 대상에 청년층 1인가구를 포함하여. 청년층 1인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임
- 청년층 1인가구에 대해 '부담가능하고, 적정한 주택(affordable and decent housing)'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거복 지의 확대 측면에서 정책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
 - 특히,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, 사회초년생 등에 대해 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준, 주거비 보조 기준 등을 개선하여 주거비 부담이 취업, 결혼, 출산·양육, 내집 마련 등 미래의사결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정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



www.nars.go.kr

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